

사단법인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설립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1. 4. 12.

제 친 시 장

나. 회부일자 : 2011. 4. 12.

다. 상 정 일 자 : 2011. 4. 19.(제181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회의)

2. 제안설명요지 (제안설명자 : 문화관광과장)

가. 제안이유

- 제천국제음악영화제등 영상문화 관련 행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단법인 국제음악영화제를 설립하고
 -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사단법인으로 함 (안 제2조)
 - 영화제의 사무소는 제천시 관내에 둠 (안 제3조)
 - 영화제 정관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명시함 (안제4조)
 - 영화제 사업에 대하여 명시함 (안 제5조)
 - 제천국제음악영화제 개최 및 각종 부대행사
 - 영화음악인 발굴 및 영화음악아카데미 개최
 - 제천영화음악상 시상 및 해외 교류
 - 영화제의 재산은 정부보조금 및 시의 출연금과 기부금, 기타 수입금등으로 하고, 시장은 이의 경비를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함 (안제6조)
 - 영화제의 사업계획승인, 결산서 제출, 지도감독에 관하여 규정함 (안 제8조내지 제10조)
 - 영화제에 대한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11조)
 - 사단법인설립에 관한 경과조치로 이 조례 시행전에 설립된 사단법인 국제 음악영화제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봄(안 부칙 제2조)

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흥완식)

- 본 조례안은 제천국제음악영화제등 영상문화 관련 행사·사업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단법인 제천국제 음악영화제를 설립하고,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- 조례안의 주요내용은
 - 국제음악영화제의 법인격과 정관, 사업, 재산의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
 - 시의 재정지원등 지원에 관한 사항과, 법인의 사업계획 승인 등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
- 본 조례안은 기 설립운영중인 사단법인 국제음악영화제(2007.7.6 설립허가)의 안정적·지속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코자 제정 하는 것으로서, 조례안의 내용이나 운용 규정등은 상위법령에 저촉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
- 사단법인 국제음악영화제의 연간(시기별) 활동 상황과 사무국 운영 현황 등에 대하여 살펴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.

4. 질의 및 답변 (답변자 : 문화관광과장)

“없 음”

5. 기타의견

“없 음”

6. 토론요지

“없 음”

7. 심사결과

“원안 가결”

8. 심사보고 불임서류

- 사단법인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설립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. 끝.